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805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교사업
2. 교육사업
3. 봉사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복지사업
 2) 회관관리운영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회는 본 교단 산하 각 노회 여전도회연합회로 조직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

1.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1장 제2조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예장(통합) 소속교회 여성으로 한다.
2. (총대) 총회 총대는 다음과 같다.
 - 지 연합회의 총대(각 연합회의 회원 매 400명에 1인)
 - 본회 실행위원

- 옥합선교회원, 영생회원(총회 시 등록한 회원에 한하며 언권만 부여함)
- 비례대표 (전체 총대의 3% - 본회가 선정함)

3. (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4. (총대 파송 제한) 각종 상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연합회는 총대 파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상벌규정)

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 자격 제한 및 제명 또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 및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8인, 직전회장 1인, 서기 2인(정·부), 회의록서기 2인(정·부), 역사기록서기 2인(정·부), 회계 2인(정·부)

제9조 (선거)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은 무기명 투표하되 재석총대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투표하되 종다수로 순위를 정한다. 서기(정·부), 회의록서기(정·부), 역사기록서기(정·부), 회계(정·부)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재선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이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보선)

1. 회장 유고시 잔임기간은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선임부회장 유고시에는 유고 당시의 부회장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임부회장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선임부회장으로 선출한다.
3. 회장과 선임부회장 이외의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단, 필요시에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에 득표순으로 그 사무를 대행한다.
3. 직전회장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한다.
4. 서기는 총회시 제출한 헌의문의 청원에 관한 서류를 처리하며 총회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지시하고 임원회록을 기록 보존한다.
5.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6. 회의록서기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7. 회의록부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도우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8. 역사기록서기는 본회의 활동 및 사업 전반의 역사를 기록 보관한다.
9. 역사기록부서기는 역사기록서기를 도우며 역사기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0. 회계는 총회의 결의와 지시에 따라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에 보고하며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11.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5장 실행위원 및 각부 위원회

제13조 (실행위원회)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6개 부서와 7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기획행정지원부, 선교부, 교육문화부, 사회봉사부, 홍보전략부, 재정부,
계속교육원, 여전도회장학회, 옥합선교회, 여장로회,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 (사)예장여연

제14조 (조직 및 선거)

1. 실행위원은 임원,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로 구성하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단,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협력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약간 명을 두며,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협력위원은 본회 실행위원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4. 전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단, 70세

이상의 전회장은 본회 실행위원회의 발언권만 갖는다).

5. 임원 외의 실행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무)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지원부는 여전도회 전반사업의 정책수립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계획 및 평가를 하며, 규칙제정 및 지연합회 장기발전을 도모한다.
2. 선교부는 국내, 해외, 군선교, 학원선교, 특수선교, 남북한통일선교 등 제반사업을 담당한다.
3. 교육문화부는 지교회 회원들의 영적, 지적 향상을 도모하며, 기독교 문화창조를 위하여 대중매체선교, 전문인여성선교와 여전도회 역사 계승을 위한 청년회원운동을 전개한다.
4. 사회봉사부는 봉사활동을 조성하여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연구 실천하며,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국제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 에큐메니칼 운동 및 국내외 섭외관계를 담당한다.
5. 홍보전략부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세계화의 창조적인 멀티전략을 구축하여 본회 정책 및 홍보를 강화하며, 여전도회의 역사자료를 수집, 출판, 정리하고, 역사전시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6.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을 편성조달하며 본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각부 위원회의 재정을 검토 관리한다.
7. 계속교육원은 여전도회원들의 능력을 계발하여 선교의식, 역사의식을 고취함으로 교회와 사회에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
8. 여전도회장학회는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및 여전도회 선교사역을 위해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기여한다.
9. 옥합선교회는 지연합회장을 역임한 회원들이 옥합을 깨뜨려 헌신 봉사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해외 선교사업에 힘쓴다.
10. 여장로회는 성서연구를 통해 장로의 자질향상과 회원 간의 친교와 연합정신을 강화함으로 여성의 선구자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교회의 민주화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한다.
11.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은 전국 산하 여전도회 회원들이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12. 사단법인 예장여연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상담, 보호, 복지, 교육 분야의 전문 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삶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소외된 여성과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13. 회관관리운영위원회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선교, 교육, 봉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전도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위원회 조직)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협조 실천한다.

1. 각부 위원회 구성은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에게 일임하되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부서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회칙에 준한다(단, 위원은 총대에 국한하지 않는다).
3. 각 위원회는 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집하며, 필요 시 부장 또는 상임위원회 대표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공천위원회)

1. 공천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되 그 수는 7명으로 한다. 선출된 공천위원은 임원후보를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부) 후보를 공천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2. 회장과 총무는 직권상 참석하되 투표권은 없다.
3. 공천위원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공천위원회의 위원 중의 결원은 실행위원회에 의해 보충한다.

제18조 (감사)

1.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두며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집행에 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제19조 (인사정책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지연합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회장으로 구성된 인사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0조 (유관기관 이사 선임 및 파송)

본회가 파송하는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이사 혹은 대표는 임원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

제6장 사무직원

제21조(직원)

1. 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1인, 국장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사무처장 1인을 둘 수도 있다).
2. 직원에 관한 구체적 시행사항은 직원근무 내규에 따른다(단, 직원근무 내규는 본회 인사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회 의

제22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각부 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7월 중에 소집 공고하여 9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실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함에는 소집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대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개최일 7일 전에 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성원)

총회는 재적총대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총대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제26조 (회장)

회장은 총회를 관장하며 의결에 있어서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의권을 가진다.

제27조 (서명)

회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서명 날인한다.

제2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연합회 및 각부 사업보고 검토

2. 결산통과 및 예산심의
3. 실행위원의 임명 및 승인
4. 본회 정책의 연구 결정 및 중요 사업 계획의 승인
5. 헌장의 개정 및 수정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1. 소집: 임원회는 매월 첫째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2.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2) 본 헌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계획
 3)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계획
 4) 기타 중요사항

제30조 (실행위원회)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결의한다.

1. 소집: 실행위원회는 2개월에 1차례씩 해당 달 셋째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임시실행위원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성원: 부원 회의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그 과반수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실행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고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시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상임위원회)

본회 제반 사업 결의 및 상임위원회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제8장 재 정

제3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연합회 분담금, 여전도회 주일(1월 셋째 주) 헌금, 영생회비, 회관 운영 선교헌금, 각종 선교비, 국내외 유지의연금으로써 충당한다.

1. 연합회 분담금은 각 연합회 회원의 회비 십일조로 한다.
2. 실행위원회비, 각부 위원회비, 상임위원회비로 한다.
3. 영생회비는 일시금 1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장 헌장의 수정 및 개정

제34조 (수정 및 개정)
본 헌장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총대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세칙)
본 헌장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36조 (시행)
본 헌장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헌장제정 1928. 09. 09.
헌장수정 1960. 08. 28
헌장수정 1989. 09. 06.
헌장수정 2009. 09. 02.
헌장개정 2015. 09. 01.
헌장개정 2021. 10. 12.
헌장개정 2022. 09. 01
헌장개정 2023. 09. 05
헌장개정 2024. 09. 03.
헌장개정 2026. 09. 01.